

2024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제4차
(速記録)

- 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시 : 2024. 5. 23.(목) 14:00 ~ 15:12
- 장소 : 문화본부 4층 대회의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808호

Tel) 02-537-0889 Fax) 02-738-0123



2024년 제4차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건축유산분과)

◆ 일시 : 2024. 5. 23.(목) 14:00 ~ 15:12

◆ 장소 : 문화본부 4층 회의실

◆ 참석자 (8명)

위원장 : 000

위 원 :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배석자 : 000 과장, 000 팀장, 000 주무관, 000 주무관,
000 주무관

◆ 심의안건 (총 6건)

○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설계승인(1건)

① [봉황각] 기단면 및 마루 보수공사

○ 시 지정문화재 신청 타당성 심의(1건)

② [보문사 대웅전] 시 지정문화재 지정 전 타당성 심의

○ 국가 지정(등록)문화재 신청 타당성 심의(2건)

③ [화계사 대웅전]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타당성 심의

④ [한블레싱]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타당성 심의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등(2건)

⑤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관훈동 민씨 가옥][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주변 부대 관람석 그늘막 설치[재심]

⑥ [삼군부 총무당] 주변 가설건축물 축조

(개회)

○ 000 과장

2024년도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제4차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4/K0523/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2/33



오늘 안건은 총 6건입니다. 심의사항으로 보시면 시 지정문화재 설계승인 1건이 있고 타당성 심의 건, 역보지역 내에 현상변경 건이 있습니다.

■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설계승인
□ [봉황각] 기단면 및 마루 보수공사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으로 봉황각의 설계승인을 심의하는 건입니다. 먼저 설명 들어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입장)

○ 사업관계자

안녕하십니까? 사업명은 봉황각 기단면 및 마루 보수공사이고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 원이고 사업목적은 봉황각 기단면이 균열 및 이완되어 있고 마루 목부재 부후 및 이완되는 상태여서 금회에 이 기단 및 마루 보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균열 및 이완된 기단면을 긁어내고 생석회다짐을 설치하고 틈마루와 누마루 귀틀, 청판을 부분 보수하려고 합니다.

연혁과 보수이력입니다.

사진에서처럼 기단 부분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열이 되어 있고 마루 부분도 청판 부분이 많이 이완되고 하부가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단 상태는 전체적으로 균열이 보이고 이 틈마루 부분이 아까 그 사진이고요. 여기는 하부의 청판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마루 부분인데 귀틀 부분부터 이완이 심하고요. 사람이 올라갔을 때 꿀렁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도면은 마루 해체 범위를 표시한 부분이고요. 기단 부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 해체 부분은 교체부재를 표시한 것이고요. 지금 이 기단도 같이 보수할 예정입니다.

마루 상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점선 부분이 전체 목재 해체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솔리드 부분이 교체 부재를 표시한 겁니다. 누마루 부분 마찬가지로 여기 히든 부분이 해체범위이고 솔리드 부분이 교체 부재 부분입니다.



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질문 있으면 해 주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누마루 부분이 굉장히 뒤틀려서 위험하더라고요. 하방이 부재가 너무 작고 맞춤이 좀 이상해서요.

○ 사업관계자

예. 귀틀 부분이 이완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예. 이완도 이완이지만 맞춤이 좀 이상해서 곧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수리를 해야겠는데, 지금 위의 청판을 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사업관계자

지금 귀틀도 부분적으로 교체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어디까지 교체를 합니까?

○ 사업관계자

솔리드 해치된 부분이 교체 예정입니다.

○ 000 위원장

기둥이 많이 뒤틀려서 빠질 것 같은데요.

○ 사업관계자

기둥 부분은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 000 위원장

내년도에 할 거면 지금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 사업관계자

당장 청판이 주저앉은 상황이어서요.

○ 000 위원장

왜냐면 지금 고치면 내년에 또 두 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제 갔다 와서 '시급'으로 해냈거든요, 위험해서요.

○ 000 주무관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봉황각이 이렇게 봤을 때 이쪽 부분은 2024년도 예산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오른쪽 편에 있었던 부분은 2025년도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던 것이고 지금 이것은 올해 사업 진행 건인데요.

○ 000 위원장

알고 있는데 누마루 부분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년에 할 거니까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제 봤더니 상태가 심해서 기둥이 많이 틀어지고 하방의 부재가 굉장히 얇아서 맞춤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꺾쇠로만 해놨어요. 위험해서 그것은 '시급'으로 해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공사를 할 거면 지금 누마루 공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사용할 때 그 부분은 사용을 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5

저도 그 말씀에 부언을 하면 귀찮고 청판을 바꾸는데 누마루 쪽은 머름이 있나요, 없나요?

○ 000 위원장

머름 있어요.

○ 위원5

그러니까 문제가 청판하고 귀틀을 바꾸게 되면 머름도 사실은 다 못 쓰는 거거든요.

○ 000 위원장



지금 다 빠져있던데요.

○ 사업관계자

머름하고는 같이 치목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기둥에 귀틀 부분이 다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름은 손 안 대는 것으로.

○ 000 위원장

머름도 다 빠져 있어요.

○ 사업관계자

전체적으로 기둥이 돌아서 부재들이 많이 이완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맞춰서 긴급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우선은 이것을 보수하고 내년도에 다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 위원5

머름은 내년에 다시 하고요?

○ 000 위원장

내년에 손을 볼 것 같으면 올해 하는 공사가 소용이 없죠. 한 번에 하는 게 낫죠. 돈만 버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해체를 해야겠네요.

○ 위원5

8페이지 사진에 보면 당장 11번과 12번 사진은 누마루가 아니고 텃마루 인가요?

○ 사업관계자

여기가 누마루입니다.

○ 위원5

그러니까요. 문제는 여기 보시면 기둥 옆에 머름이 거의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귀틀을 바꾸고 청판 바꾸고 머름은 여기에 맞춰서 다시 하고, 기둥이 저렇게 돌아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현재 기둥이 돌아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장

조금 돌아가 있는 게 아니고 심하게 돌아가 있어요.

○ 위원5

그리고 봉황각을 현재 뭘로 쓰고 계시나요? 일전에 가보니까 전시대 같은 것으로 해놓으셔서요.

○ 사업관계자

행사 때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퇴장)

누마루 부분은 빼고 내년 공사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봉황각에 공지를 해서 누마루 부분은 당분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하죠.

○ 000 주무관

뫼마루는 진행하고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이 선정되면 합쳐서,

○ 000 과장

네. 내년도에 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3

하나 질문 좀 해도 돼요? 저는 이 문화재를 잘 몰라서 약간 일반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보수를 해요. 지금 누더기라는 상태거든요. 사실 해가 다를 때 보수하면 재료 등이 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달라지고 할 텐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종합적인 보수계획을 만들어서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훨씬 합리적이지 그때 그때, ‘이거 하겠습니다. 안 좋습니다.’ 갖고 오면 당연히 안 좋아요. 또 ‘뭐 하겠습니다. 안 좋습니다.’ 갖고 오면 당연히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보수하는 게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냐. 지금 이 정도 상태라면 전체적인 종합진단을 해서 전체적인 개·보수든 보존처리를 하는 게 합리적인 문화재 관리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일반인의 시각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장

맞는 말씀인데요. 시 예산이 1년에,

○ 위원3

문화재를 시가 관리하겠다고 하면 지금 여기 들어가는 돈이 얼마쯤 돼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쪼가리 예산을 내서 문화재를 자꾸 걸레를 만드는 게 시의 문화재 관리에 맞는 정책이냐. 차라리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확 오거든요.

○ 위원1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 돈이 없어서요.

○ 위원3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절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쯤 들어가는지도 모르잖아요.

○ 위원2

저도 여기 보수이력을 보니까 거의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하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한데 부분적으로 해봐야 땀질식의 접근이니 까 종합보수계획이 그래도 한 번 검토하고 쪽 진행된다면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 000 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뒷마루 부분은 우선 공사를 하라고 하고 누마루는 이월시킨 다음에 내년 예산으로 종합검사를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하시는 것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 위원6

정기검사는 할 거 아니에요.

○ 000 과장

예. 안전진단 들어갑니다.

○ 위원6

지난번 회의 들어간 게 올해 시설과에서 한 건데. 거기도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올해 지금 하고 있거든요.

○ 000 과장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부재가 오래 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나오는 게 있는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6

과장님이 지난번에 조사할 때 나온 결과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반영이 돼서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게 없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거니까.

○ 000 과장

2025년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결과에 매칭해서 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 000 위원장

다른 것은 괜찮은데 누마루가 위험해요. 지나치게 많이 돌아갔어요.



○ 000 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종합진단도 같이 해보는 것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 위원5

안전도 안전이지만 그 옆의 건물과 같이 해서 보면 너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요.

○ 000 위원장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죠.

■ 시 지정문화재 신청 타당성 심의

□ [보문사 대응전] 시 지정문화재 지정 전 타당성 심의

○ 000 과장

두 번째 안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북구에 있는 보문사 대응전을 시 지정문화재 신청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심의 안건입니다.

(000 교수 입장)

○ 000 주무관

이번 사찰 건축물 2건에 대한 지정 심의가 있고요. 먼저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이 들어온 보문사 대응전하고 이어서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이 들어온 화계사 대응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조사를 000 위원장님하고 000 위원님이 가셨고 관계전문가로 000 선생님이 같이 가셨는데요. 오늘 문화재 설명은 같이 현장조사를 000 선생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000 교수

방금 소개받은 000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문사 대응전은 2017년도에 해체 수리과정에서 연속해서 3시기의 상량문이 발견되어서요. 실제로 겹으로 보이는 양식상의 특징과는 다르게 18세기 중반



이라는 상량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현상은 사실은 19세기 후반의 양식적 특징이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상량문이 3개가 나와서 어떤 연속성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겉의 건물 상태는 비교적 온전히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해체 수리하고 나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가치를 사찰에서 인정하고 주변을 저렇게 정비했습니다. 살면서 외부의 시설물들이 들어온 것들을 해체 수리하면서 가치가 확인이 되므로 스스로가 좀 어느 정도 정리해서 건물을 깔끔하게 만든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항공사진에서도 보면 작은 네모 안이 이번 대상 건물인데요. 주변으로 많은 건물들이 침범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다행히 건물 자체는 크게 훼손된 게 없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000 주무관

그래서 현장에서 000 위원장님께서 이미 경내가 난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보호구역 지정까지는 필요가 없고 딱 전각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전각을 바라봤을 때 향우측 모서리, 그러니까 지붕 모서리 부분에서 오른쪽 상단 방향으로 주택가 쪽으로 50m를 설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50m를 둘러봤을 때 다행히 주택가 쪽으로는 많이 침범하지 않고 도로나 화단 정도의 경계에 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찰이 조계종 미타사와 담벼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미타사 쪽이 조금 들어오고 나머지 왼쪽 아래 부분은 다 보문사 경내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보호구역을 지정해도 충돌하는 게 없습니까?

○ 000 과장

보호구역을 저기 대웅전을 넘어서 지정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거기서부터 넓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대웅전 자체만 보호구역 지정 없이 보호물로 지정해놓고 50m를 해놓은 그림인데 여기서 고민스러운 부분은 민가 쪽으로 넘어가는 빨간 선과 하얀 선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제가 그때 갔다가 느낀 점은 저 사찰 자체가 이미 난개발이 되어 있는데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영문도 모르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을 남겼던 기억이 납니다.

○ 000 과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조례상으로 보면 50m 이내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넘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000 위원장

그것을 제외시킬 수는 없나요?

○ 000 과장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제외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 000 과장

보문사 경내로 한정하면 나중에도 마찰은 없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 위원5

그것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문사 영역인 빨간 라인을 보면 실제로 주거지 말고 뒤편으로 자기네 사찰의 땅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인정해 주고 외곽 부분은 오히려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도시계획 쪽에서 불가능한가요? 저는 이게 궁급하긴 하더라도요. 일방적으로 그냥 컴퍼스로 그림을 그려서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를 따지는 게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 000 과장

우선 그러면 다음 건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얘기를 나누어보시죠.

○ 위원3

뒤의 임야는 다 절 것입니까?

○ 000 과장

예.

○ 000 교수

뒷 부분의 빨간 것은 전부 보문사 땅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다음 건까지 설명을 들을까요?

■ 국가 지정(등록)문화재 신청 타당성 심의

□ [화계사 대응전]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타당성 심의

○ 000 교수

화계사 대응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계사 대응전도 제가 같이 조사를
위원장님하고 다녀왔고요.

이것은 1870년으로 편년이 정확하고요. 기록과 연륜연대 모두가 다 이 시
기를 집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침계민열이라는 훌륭한 도목수가 지
은 건물이 맞고요. 현재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물로 지정하고
싶어 하는 건물입니다.

현장에서 회의해서 현장조사 위원들의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문화재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과연 이게 보물이 될 만한
순번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문제의식에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5

그런데 저는 9페이지 그 표현은 조심스러워요. ‘19세기 후반 건축되어 보



물로 지정된 다른 사찰들과 비교하여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빠름' 이 표현은 순화해야 한다. 왜? 지역에 있는 사찰의 19세기 건축과 서울근교에 있는 19세기 건축을 일방적으로 시기만 가지고 빠르다 이르다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심스럽고 조금 다른 논리가 있어야지 이 표현이 돌아다니는 것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되지요?

○ 000 교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날도 저는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떠나서 저도 물론 서울경기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전쟁의 한 복판에 있었고 여러 가지로 살아남기가 힘든 지역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치를 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수작인가? 정말 이게 뛰어난가?

○ 위원5

어떤 면에서요?

○ 000 교수

실제로 포를 뜯어보면 양식적 특징에 있어서도 사실 아직까지는 투박함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5

아니, 투박함이 뭐냐고요.

○ 000 교수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야죠. 양식사적이라는 것은 비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과 비교했을 때 쉽게 말해서 수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 위원5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보문사 대응전은 예를 들어서 1747년에 중수했던 상량문하고 현재 모습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1747년의 중수 기록이 현재 남아 있는 형태보다 중요하다라는 건가요?



○ 000 교수

그 뜻이 아니고 상량문을 왜 넣었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죠. 상량문을 거기에 넣었다는 것은 이 건물은 지금은 많이 모양은 바뀌었지만 그 건물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그 당시의 목수들과 사찰이 의도했다는 거죠.

○ 위원5

그리고 1870년에 침계민열이 참여한 것은 상량문이 없는 거예요?

○ 000 교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5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량문을 여기에도 넣었는데 왜 그것은, 이 상량문은 안 중요하고 왜, 1747년의 상량문은 중요한데 현재 모습과 다르고 그다음에는 1870년 이것도 상량문을 넣었는데 이것은 시기가 늦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 000 교수

만약에 두 개가 다 같이 국가 지정으로 올라왔다면 같은 방향으로 하면 될 겁니다.

○ 위원6

앞의 것은 시 지정이고 이것은 보물로 가는 거니까 보물로 갈 때 다른 보물급과 비교해봤을 때는 수작이 아니라는 거죠.

○ 위원5

침계민열의 다른 건물은 어떤가요?

○ 000 교수

꽤 많이 지었는데요.

○ 000 위원장

제가 갔다 온 사람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19세기 후반 건물이라 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4/K0523/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15/33



른 사찰과 비교해서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빠르다고 했는데 사실 건축된 시기가 우리가 지정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건축물이 아무리 훌륭해도 문화재로 지정하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건물이다, 조선시대 건물이다, 전기다, 후기다 하는 것은 문화재를 지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 위원5

저는 이 논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밀양의 영남루가 이번에 국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1844년이에요. 그러면 19세기 중반에 된 것은 국보가 되어도 되고 19세기 후반에 지은 것은 사찰인데 안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1870년이 침계민열이 참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분의 작품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표현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냥 시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 000 교수

예.

○ 000 과장

질문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000 교수 퇴장)

○ 000 과장

안건이 두 건이니깐 하나씩 보시는 것으로 해서 먼저 보문사 대웅전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6

건물은 시 지정으로 하되 보호구역은 꺾어서 자기 경계만 잡아서 50m 이내로 하는 거죠?



○ 000 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호구역은 추가 검토를 해서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로.

○ 위원4

지정을 안 하면 이게 없어져요?

○ 000 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4

그러면 딱히 지정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지정해 주면 끊임없이 돈 달라고 할 텐데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 고쳐야 한다고 하고 뭐 짓고. 이게 엉망진창이니까 전체 배치계획 새로 할 돈 달라고 하고 잘 생각해야 할 일이에요.

○ 위원5

구역에 대해서 혜택이 계속 주어지는 거죠?

○ 000 과장

예.

○ 위원4

계속 뭐 한다고 하고 지금 주민들하고도 문제가 있고.

○ 위원5

저도 보호구역 지정이 그렇게 필수적인 게 아니라면 당 건물로만 문화재를 신청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 000 위원장

경내는 엉망이에요.

○ 위원4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그것을 바로 잡겠다고 나서는 거죠 이게.

○ 위원6

근데 지정으로 간다면 문화유산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이 생겨서 경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정해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예 지정을 하지 말아야죠. 그 해당 건물만 하게 되면 우리가 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건물만 하게 되면.

○ 000 과장

그런데 만약에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으로 경내가 설정이 되더라도 경내에서 다른 것을 할 때 문화재를 체크해볼 수 있는 것은 있겠습니다.

○ 위원6

난개발 된 것을 더 난개발 되지 않게 막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 000 과장

그럼 이 건은 가결로 정리하고 보호구역 할 때 사유지 문제를 고려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한다는 조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예.

○ 000 과장

화계사 대응전 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6

사실 이 건은 보물로 여기서 올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올려서 국가유산청에서 알아서 판단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셨지만 화계사 분위기도 그렇고 민열스님의 작품이 있고 거기다 또 왕실과 관련이 있고 해서 건물 자체는 그렇지만 차라리 국가유산청에 올려서 거기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 000 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과 비교분석했을 때 보물로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4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 000 과장

이런 면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은 정리가 된 것 같고 국가로 올리냐 마냐인데, 이것을 그러면 그냥 부결로 할 것이냐 보류를 해놓고 다른 조건으로 해볼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 위원5

연구용역이 가능해요?

○ 000 주무관

이 건물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거기서 작성해서 보내줬습니다.

○ 위원3

하나 여쭙보면 이게 지금 국가 지정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지정으로는 가능해요?

○ 000 주무관

1985년에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보로 올리기 위한 보고서를 사전에 작성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화계사 쪽에서 작성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줬습니다.

○ 000 과장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시기의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니까 사찰 측에 이 문화재의 시기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조사해서 비교하는 정도의 조건으로 해놓고 보류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5

저는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시든 강북구든 2,000만 원짜리 정도 용역은 수행해보고, 저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수작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수작이 어떤 것이고 수작과 비교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다르고 이것은 그래도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조금 다르죠.

○ 위원6

민열스님이 거의 마지막 승장으로서의 힘을 쓰고 그다음부터는 승장 계열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의미는 있는데…….

○ 위원5

건물을 한 번 보세요. 건물을 보시면 이것을 보고 아니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심스러워요.

○ 000 위원장

건물 자체가 길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문화재를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시기잖아요. 시기가 다른 사찰 건물이 보물로 지정된 것보다는 너무 늦다는 거죠.

○ 위원5

한 번 확대해서 보시면 안 될까요? 이 정도는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고양시인가, 파주시에 있는 고종 원당하고 관련된 그 사찰은 국가 지정문화재가 아닌가요?

○ 000 주무관

경기도·서울지역에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까 PPT에 띄워드렸던 게 다입니다.

○ 위원5

이거 한 번 볼까요? 이건가요?



○ 000 주무관

이것은 서울하고 경기 쪽에서 침계민열이 참여한 사찰입니다.

○ 위원5

그러면 저기에서 국가 지정문화재가 하나도 없어요?

○ 000 주무관

네. 제가 전체적으로 사찰 건축물 중에서 국가 지정으로 된 것을 찾아봤는데 대체로 하한선은 18세기 정도이고요. 1800년도 넘어오는 것은 몇 건 있기는 한데 조선 초·중기의 건물양식을 거의 그대로 썼거나 아니면 건물 내에 중기나 초기적인 요소가 있거나 그런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대체로 전국 사찰 건물의 하한선은 18세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경기 지역에 만들어진 것 중에는 보물로 지정된 것만 아까 여덟 건 정도 있습니다.

○ 위원5

아까 국가 지정문화재로 있는 경기도 리스트 좀 보여주세요. 보광사 대응 보전이 몇 년인데 저것은 국가 지정문화재예요, 아니에요?

○ 000 주무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유형문화재입니다.

○ 위원5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 정도 급인데도 안 되는 것을 보면 논리가 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다음 건 하겠습니다.

○ 000 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한블레싱]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타당성 심의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한블레싱이라고 해서 영업, 숙박시설을 국가 등록 문화재로 신청하는 건입니다. 설명 한 번 들어보시고 하겠습니다.

○ 000 주무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블레싱이라는 이름의 건축물이고요.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소유의 건물이고요. 현재 위치를 보면 서울역 맞은편이고요. 대우빌딩 건물 뒤부터 밀레니엄힐튼호텔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우빌딩 뒤부터 밀레니엄힐튼호텔까지가 양동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일부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 건축물도 현재로서는 재개발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건물은 현재 소유자의 외조모께서 1969년에 매도를 했다는 등기가 남아 있어서 적어도 1969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18년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의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인데요. 철근콘크리트하고 벽돌 혼합 조 구조이고 지상 4층이고 지하에 작게 1층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겉에 3면, 이 뒤쪽이 아니고 좌우랑 정면에만 노란색으로 도색해놓은 상태이고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철제빔으로 내부를 보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전 사진이라든지 그 전에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 보안을 조금 더 요청했는데 이게 개인소유 건물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할 만한 여건이 안 돼서요. 현재로서는 리모델링 후 상태로만 볼 수 있고 지금 1층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페로 사용하고 있고요. 2층하고 3층은 소모임 공간이고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소유자가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좁고 가파른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일은 원래는 부착되어 있지 않았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타일을 부착했고 계단하고 현관 사이의 빈 공간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에 강북구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고 4월 4일에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전문위원님과 조사를 했고요. 조사의견으로는 신청이 힘들지 않겠느냐. 해당 건물이 어떤 건축사적인 의미가 높다거나 혹은 만들



어진 소재지역이나 시대를 반영할 만한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등**

□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가옥], [관훈동 민씨 가옥],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주변 무대 관람석 그늘막 설치<재심>

○ 000 과장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이고요. 남산골 한옥마을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지난번에 올라온 안건인데 재심의 건입니다.

(사업관계자 입장)

○ 사업관계자

안녕하세요? 천우각 무대 관람석 그늘막 설치 사업의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20m×8m인데 지금 여기 6번에서 본 지역이 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본 건데 반대쪽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앞의 전면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하고 재질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행사에 필요한 이용객들의 그늘막과 우천 시 대피 때문에 설치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대상지 주변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시야 확보 문제와 나중에 설치됐을 때 우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방향. 그늘막이 어느 정도의 그늘을 설치하는지 부분 그 세 가지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재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는데 자재적인 측면에서 이미지와 같은 등나무를 설치하는 것들도 친화적이니까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저희가 검토했던 두 가지가 인조이엉, 일종의 집과 같은 이엉을 엮는 것과 인조기와를 넣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높이 문제와 시야를 여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늘막 구조가 어떤 것이 있었나 했을 때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장충체육관 뒤에 있는 그쪽 부분에 해당되는 이런 구조도 있고요. 스판 때문에 정면을 열게 되면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늘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텐션 앞을 열기 위해서 텐션을 당겨서 하는 구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우람합니다. 8m, 7m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이고 막구조의 형태에서 추천했던 것들은 가운데에 설치해야 하는 것들도 그렇고 앞에 기둥이 설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뒤에 서게 되면 캔틸레버와 같은 구조의 형태이기 때문에 기초가 커질 수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기는 이게 제일 좋겠죠. 대신 돈은 제일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 형태는 모양적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는 면도 있었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중간에 기둥이 설 수 있는 부분에 열기는 열었는데 기초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늘 분석을 춘·추분에 맞춰서 오전 10시에 했을 때는 등나무든 인조이엉이든 다 커버가 되고 오후 2시가 다 커버가 되는데 오후 6시가 되면 이렇게 바뀌어서 커버가 안 됩니다. 그늘막이 뒤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은 이렇게 보면 앞쪽은 다 설치를 다 안 한 겁니다. 어느 구조든지 등나무든,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것을 해도 그늘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 그다음에 자재화와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등나무를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했고 인조이엉, 인조기와 엮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막구조 파고라 형식은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 형태별로 그다음에 구조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등나무 지붕을 없으면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근접해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미지보다는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식물이니깐 당년(當年)의 효과는 절대 안



나옵니다. 최소한 3년 정도는 돼야 등나무가 올라가서 번지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야기하셨던 시야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스판의 길이라든지 구조적인 것 때문에 앞의 기둥을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인조이영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고 앞의 시야로 인해 기둥을 없애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그다음에 물매를 위해서 뒤로 하기 때문에 기둥도 높다.

그다음에 인조기와의 엮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형태이고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매는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파고라 구조가 세 가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를 제시하는 것 중에는 사실 이게 제일 안정적이었어요. 왜냐면 바람이 불면 파고라가 밑에서부터 치고 들어와서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의 기둥들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 구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이것하고는 안 어울리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자재선정에 있어서는 올림픽공원에도 있고 덕수궁에도 있죠. 이렇게 올려서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등나무를 올리면 높이는 3.8m에 6.3m로 해서 앞면은 비워놔도 그들은 이렇게 지는 거니까 다 해결할 수 있는 목재구조로서 하는 부분이 있고 등나무 구조와 기초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무게감이나 이런 것은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등나무는 이런 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온 것은 세 가지로, 추천해 주셨던 막구조에 등나무를 저희가 새롭게 제시했고 인조이영과 인조기와 등 저희가 세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래서 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 사업관계자

최초에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했죠. 이것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등나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 위원1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4/K0523/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25/33



겨울에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 사업관계자

안 되죠.

○ 위원1

안 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저렇게 만들어 놓는데 겨울이 되면 앉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앉을 거예요.

○ 배석

저희가 등나무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여름철하고 가을철, 봄철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때 그늘막을 해서 착석하시는 시민 분들이 그늘에서 행사를 보시게끔 하는 목적이거든요. 겨울에는 행사를 안 하는 관계로 등나무가 없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늘막의 이유가 특히 여름철,

○ 위원1

눈이 내려오면.

○ 배석

보통 겨울철에는 남산골에 관객들이 많이 없어서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 위원1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많아요.

○ 배석

예.

○ 위원1

아까 보여주신 저런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 사업관계자

저도 문화재 기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조경을 하는 입장이 있고 경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관을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저희들은 막구조는 제시하지 않고 인조이영이라든지 문화재보다는 급수가 낮은 초가지붕 같은 것을 제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구조를 검토하라고 했지만 너무 현대적이고 모던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막구조는 세 가지는 검토했지만 조경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차라리 이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등나무를 추천했습니다. 시간은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는 무대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봄, 가을이고 그다음에 여름도 많이 이용하고 겨울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으니까요.

○ 배석

겨울철에는 시민 분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등나무가 없더라도 시민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요.

○ 사업관계자

그러니까 기와나 문화재의 관점에서 위화감이라든지 서로 간에 상충되는 것들은 제거시켜서 단순하게 이렇게 제시해봤습니다.

○ 000 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퇴장)

○ 위원2

지난번에 인조이영에 대해서 얘기한 것 외에 시야를 가리는 것, 기둥 이런 부분 때문에 기능에 대비한 효율성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목적에 대비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으니까 다시 검토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저 등나무만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등나무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적한 게 그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시야나 기능에 맞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해서 대안을 검토해서 하고 또 막구조에 대해서 검토해도 실질적으로 꼭 이게 한옥마을이지만 전통성만 고수하는 것보다 현대적인 부분의 하이테크와 대비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뢰를 했던 건데 그 부분에서 이상하게 발표해서 온 것 같은데요.



○ 000 과장

아마 여러 검토를 했을 텐데 이분이 마음에 드는 것은 그쪽이 현대적인 구조에 대한 이질감의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1

근데 저것은 오래 못 써요.

○ 위원2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추진방향에서 비교해왔으니까 그늘막 구조에 막구조 적용하는 부분에서 우리 자체에서는 의견도 한 번 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 000 과장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6

그때 기둥이 보이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운데 기둥 없이 세우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어렵나요?

○ 위원2

지금 막구조에서는 그늘막 'B' 제안사항은,

○ 위원6

비싸서요?

○ 위원2

아니, 비싸지도 않아요. 예산 나온 것은 다 1억 2천이 나왔는데요.

○ 위원5

시야가 트이고 이질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최근 서울시 디자인 상황을 보면 이질적인 것도 선언적으로 해보자. 이런 취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야가 트이는 상태에서 구조적 안정성만 있다면 막구조로 전통과 현



대를 조화시키는 시도가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저는 의견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으로 정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000 위원장

지금 궁궐에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을 짓잖아요. 옛날에는 이것을 한옥으로 많이 지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 하이테크로 해요. 일부러 한옥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해서. 최근에 창덕궁 돈화문 옆의 창덕궁 안내소도 현대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추세는 옛날 것을 흉내 내지 않는 추세예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 000 과장

그러면 그 정도로 의견을 주시고, 근데 이게 사실 공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여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 의견으로 조건부로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 000 위원장

네.

○ 000 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야와 기능에 맞게 현대적인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고 자문의견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삼군부 총무당] 주변 가설건축물 축조

17페이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안건이고요. 삼군부 총무당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가설건축물 놓는 심의입니다.

(사업관계자 입장)

○ 사업관계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성대학교 내 가설건축물 축조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4/K0523/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29/33



드리겠습니다.

한성대학교 내에 현재 위치해 있고요. 여기가 삼군부 총무당이 있고 삼선 공원이 있습니다. 삼군부 총무당은 여기에 잡혀 있고 해당 건물은 여기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이쪽에 항공사진을 보면 공학관B동이라고 해서 6층 정도 규모의 건물이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캠퍼스 시설개요는 전체 면적은 약 39,310㎡ 정도 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학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면적은 12,240㎡ 정도 되고 연면적은 87,680㎡,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31%과 166% 되는데 이 증축되는 해당 면적은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3m×5m의 크기로 임시창고 컨테이너로 쓸 용도로 갖다놓을 예정입니다. 지상1층의 규모이고, 용도는 임시창고이고 연면적은 15㎡ 정도 됩니다.

설계도면 보시면 여기 공학관B동이 6층 정도의 규모로 있고 상상빌리지가 7층 정도 그리고 공학관A동이 지하1층에 지상6층 정도의 규모이고요. 총무당에 이 해당되는 필지가 이 문화재보호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여기가 임시창고가 적치될 공간입니다.

평면도는 컨테이너 용도라서 일반적인 용도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높이 선정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현재 여기가 7.5m 높이를 떼어서 양각을 적용하게 되면 이 기존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 안쪽 바로 밑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변의 현황 사진을 찍었던 건데 이것은 총무당 뒤쪽, 옆쪽에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한성 위쪽에서 올라왔을 때 찍었던 사진을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망점, 총무당 좌측에서 바라보는 부분인데 여기는 건물도 그렇고 수목에 가려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무당 바로 옆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여기 도 역시 조망이 전혀 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한성 위쪽에서 올라가서 찍은 건물인데요. 신청 건물이 이곳에 놓이게 되고요. 이 건물이 공학관B동, 이 건물이 공학관A동이고요. 상상빌리지, 연구관 등 건물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전에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사업시행 전과 사업시행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것은 한 번 참고를 하시라고 첨부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심의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좀 더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예. 질의 사항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위원3

냉정하게 보면 가설건축물은 아니죠? 학교에서 쓰는 시설 아니에요?

○ 사업관계자

예. 학교 용도입니다.

○ 위원3

학교에서 쓰면 가설건축물이 아니죠. 다만 도시계획 결정을 안 받아서 그런 건데 이것은 현상변경 심의 대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조그만 것까지 심의 대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것은 도시계획 쪽에서 보면 가설건축물은 아니고 그 도시계획 용도가 아닌 것으로 쓸 때가 가설건축물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로 보면 컨테이너 건물 하나라서 개발행위 대상도 아니고요. 그러면 문화재 심의에서 저런 컨테이너 건물을 하나 갖다놔도 현상변경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사실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영구건축물인 거죠. 사실상 문화재 심의로 볼 때는. 왜냐면 저게 기한이 없잖아요. 일단 학교에서 기한이 없이 영원히 쓰는 시설인 거죠.

○ 위원4

몇 년마다 검사를 받아요.

○ 위원3

현상변경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 법상으로 그런 것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임시건축물이라고 표현하면 모르겠는데요.

○ 사업관계자

사실 저희가 이 컨테이너를 놓게 된 이유가 이 부분이 재개발5구역으로 있어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아직 도시계획 결정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재개발5구역과 이 요철 부분, 학교용지와 부지정형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부지정형화를 통해서 삼성재개발5구역과 우리가 서로 땅을 주고받는 진행단계인데요. 이 임시건축물을 사용



하는 이 용도가 우리 대학에 자동차 동아리가 있습니다. 자동차 동아리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당장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 가설건축물을 우선 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계획한 게 이 필지가 정리가 다 되면 이 학생관 건물과 이 앞에 정형화된 필지를 통해서 대형 건물을 또 하나 지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유지할 생각으로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 위원3

그렇게 기간을 주시면 되겠네요. 저게 정리될 때까지만 임시로 그렇게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 사업관계자

정리가 되고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 보통 이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까지 보통 6~7년 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3

예. 그러니까 그게 될 때까지.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 000 과장

퇴장하면 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퇴장)

○ 위원3

잠깐 있다가 가는 거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 000 과장

알겠습니다. 그 기간을 조건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건 심의를 다 마쳤고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 위원6

자동차 동아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 건물인 공학관 근처에 갖다놓은 거예요. 다른 데에 놓을 수도 있는데 자기들 학과 옆에 여기에 한 것이고 그게 차후에 건물이 지어진다고 해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한을 딱 정해야죠.

○ 위원3

안 가면 강제로 이행을 하게 해요. 구청에서 당연히 관리해야죠. 여기 언제까지 한다. 그게 정리되어서 입주할 때까지. 그래서 입주가 다 되면 치워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심의를 받아서 계속 쓰겠다고 하든지.

○ 000 과장

문화재 관련해서는 그 조건이 이행이 안 되면 이행명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000 주무관

건축법상 기한을 연장 신고할 때마다 저희 위원회에 3년마다 또 올라옵니다.

○ 000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